의회

「충남학교인권문화조성을위한 연구모임」

연 구 보 고 서

2019. 12.

목 차

Ⅰ. 진행 개요 ····· 1

Ⅱ. 세부 진행 내용 ····· 2

1차 연구 ····· 2

2차 연구 ····· 13

3차 연구 ····· 24

4차 연구 ····· 65

5차 연구 ····· 64

Ⅲ. 참고 자료 ····· 70

1 연구모임 회원 ····· 70

2 충남학생인권조례(안) ····· 71

Ⅰ 진행 개요

1. 연구 개요

❍ 학교 안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들을 알아보고 원인 분석 및 방지 대안을 연구하여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

❍ 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의 참여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민관협력으로 연구

2. 총 평

❍ 사례연구, 토론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연구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등 대안 마련

❍ 인권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당사자와 민관 협력의 공감대 마련

3. 활동 경과

순	일자	활동 내용	비고
1	2019.03.13	발족식 및 제1차 세미나(충남도의회) -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공유	
2	2019.04.13.	제2차 회의 및 세미나(충남도의회/천안)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와 과제	
3	2019.05.24.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충남교육청/당진) - 주제 :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	
4	2019.06.27.	제4차 회의(충남도의회) -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 학생인권조례안 연구	
5	2019.11.13	제5차 간담회(충남도의회) -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결과 보고	

Ⅱ 세부 진행 내용

1차 연구 모임

□ 개요

일시	2019. 3. 13.(수) 10:30~12:00		
장소	충남도의회 108호 회의실		
시간계획	내 용		비고
10:30~11:00	발족식	· 개회선언 · 참가자 인사 · 대표 및 간사 선출 · 연간 활동계획 논의	
11:00~11:20	세미나	· 발표 :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 김다빈(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11:20~11:50		· 질의 응답 및 토론	
11:50~12:00		· 정리 및 폐회	

□ 진행 내용

○ 연구모임 활동 목적 토론

- 인권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공감대 형성
-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대안 마련

○ 연구 내용

- 김영수의원(대표) 포함 총 19명의 위원 참석

- 연구모임의 활동 목적과 연간 운영 계획 공유

-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

- 학생의 경험/의견 발표 기회를 늘리자는 제안

- 도교육청의 인권보장 정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요구

- 무엇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학생, 교사,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 제안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학생 당사자 참여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집담회 등을 개최하기

□ 주제 발표 자료(충남학생인권 실태조사)

1 조사의 목적

○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경험하는지, 특히 학생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 제시

2 추진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충남 중·고 학생
조사기간	2017년 8월 29일 ~ 9월 29일
응답자수	1,511명(총 64개교)
표본추출방법	시군별 임의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51%

2. 분석도구 : IBM SPSS Statistics 24, Microsoft Office Excel 2016

3. 표본의 특징

[학교급 및 설립 유형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립중학교	613	40.6	40.6	40.6
사립중학교	99	6.6	6.6	47.1
공립고	440	29.1	29.1	76.2
사립고	218	14.4	14.4	90.7
특성화고	139	9.2	9.2	99.9
특목고	2	.1	.1	100.0
전체	1511	100.0	100.0	

[지역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계룡시	135	8.9	8.9	8.9
공주시	34	2.3	2.3	11.2
논산시	160	10.6	10.6	21.8
당진시	256	16.9	16.9	38.7
보령시	112	7.4	7.4	46.1
서산시	241	15.9	15.9	62.1
서천군	20	1.3	1.3	63.4
아산시	238	15.8	15.8	79.2
예산군	45	3.0	3.0	82.1
천안시	94	6.2	6.2	88.4
홍성군	176	11.6	11.6	100.0
전체	1511	100.0	100.0	

[성별에 따른 응답자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여	783	51.8	51.8	51.8
남	724	47.9	47.9	99.7
기타	4	.3	.3	100.0
전체	1511	100.0	100.0	

3 분석결과

영역	내용	
두발, 복장 등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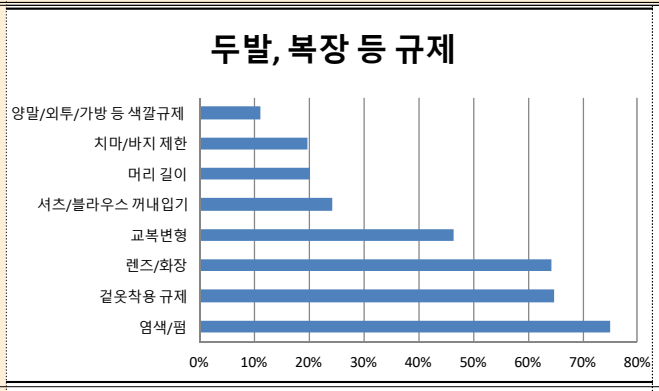	교복변형, 렌즈/화장, 겉옷착용 규제, 염색/펌 같은 경우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이 규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양말/외투/가방 등에 대한 색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2%나 있었습니다.
체벌 및 언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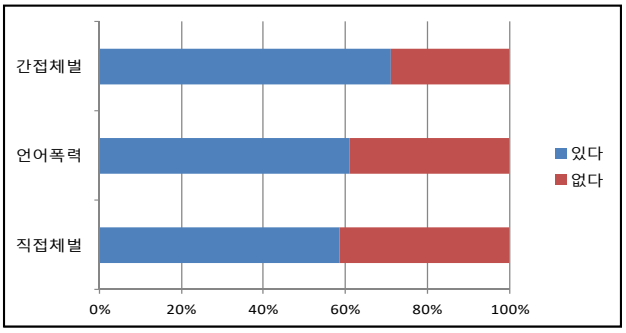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이 학교에서 체벌 및 언어폭력을 겪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립중학교에서 체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차별, 강제학습 외 규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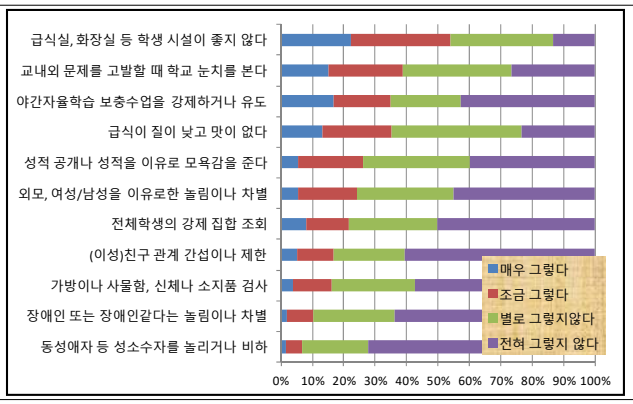	학교에서 성적 공개 등으로 인한 모욕이나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이며 그 외 외모나 여성/남성 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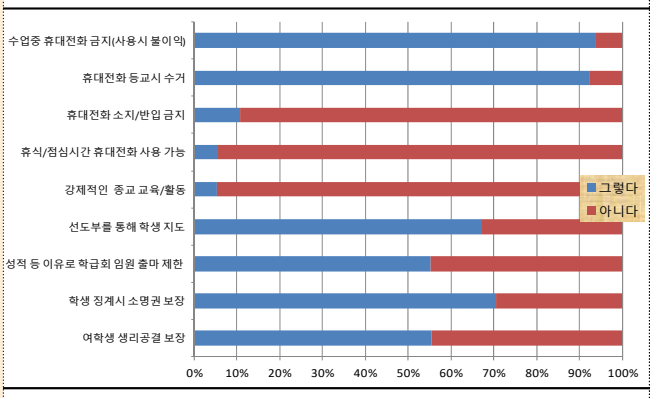	응답자 중 대다수가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성적 등으로 인한 임원 출마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5.3%로 나왔습니다.

영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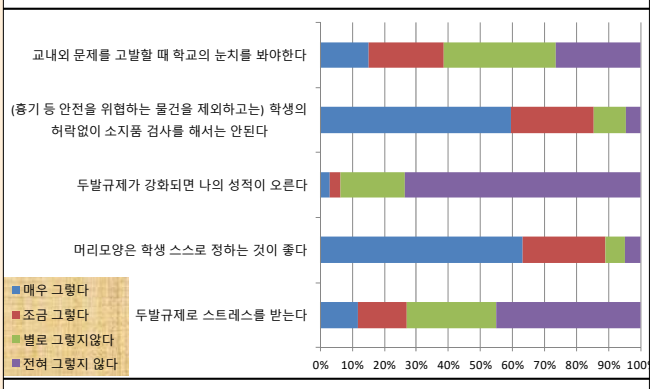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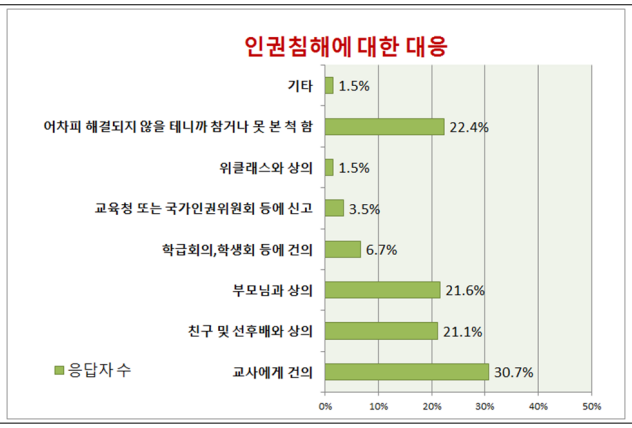	학교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의견은 교사에게 건의한다는 의견이였으며 뒤이어 참거나 못 본 척 함, 친구/부모님과 상의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권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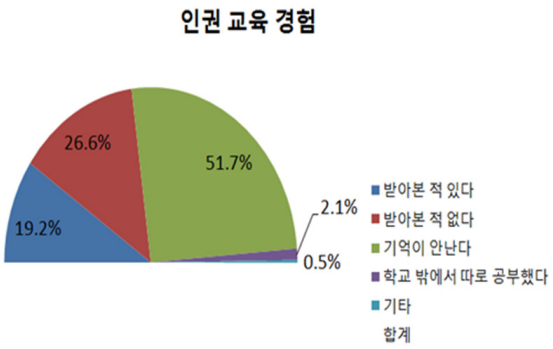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적 있냐는 질문에 19.2%가 받아 본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26.6%는 받아본 적 없다, 51.7%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칙 재·개정에 학생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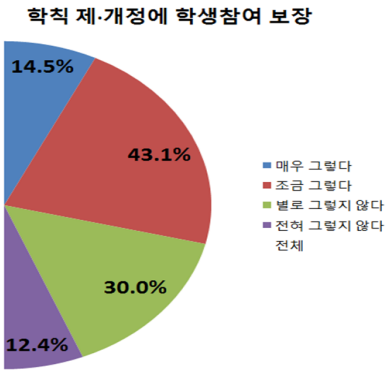	학칙 제·개정시 학생참여를 보장하냐는 질문에 42.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역	내용	
학생의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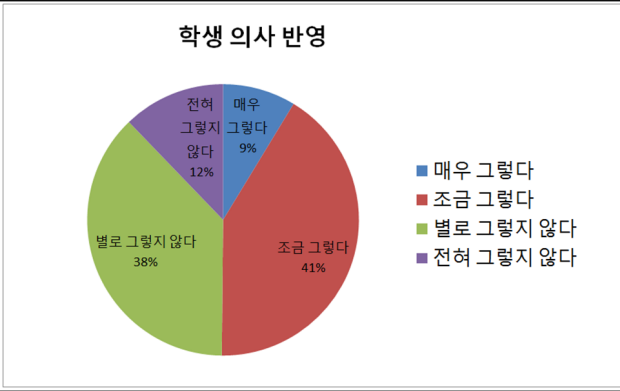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4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내 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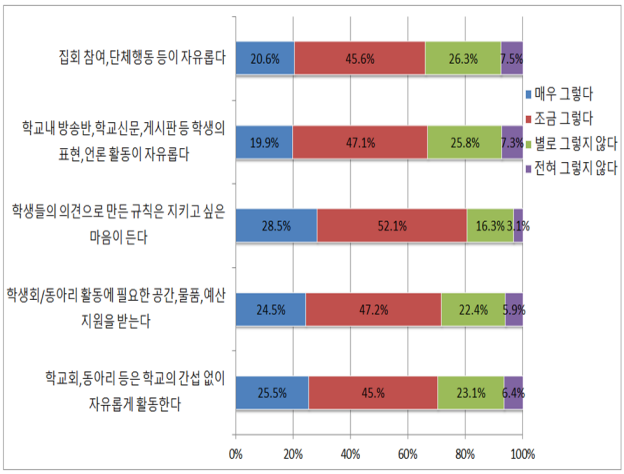	학교 내에서 집회 참여, 단체행동 등이 자유롭다는 질문에 33.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학생회, 동아리 등은 학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질문에 2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벌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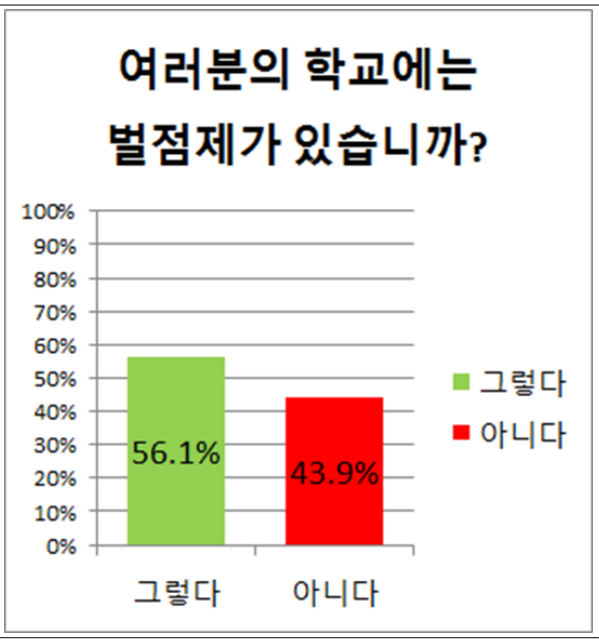	
		벌점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이며 벌점을

영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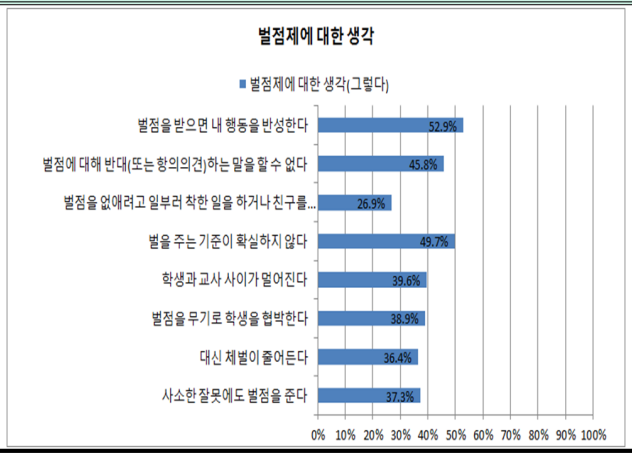	없애려고 일부러 착한 일을 하거나 친구를 고발한 적 있다는 비율이 26.9%, 벌점을 주는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나타났습니다

영역	내용	
기숙사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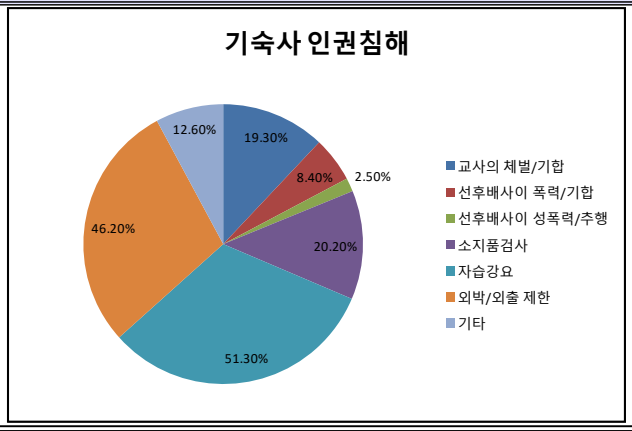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로 자습강요가 5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박/외출제한이 46.2%, 소지품 검사가 20.2%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생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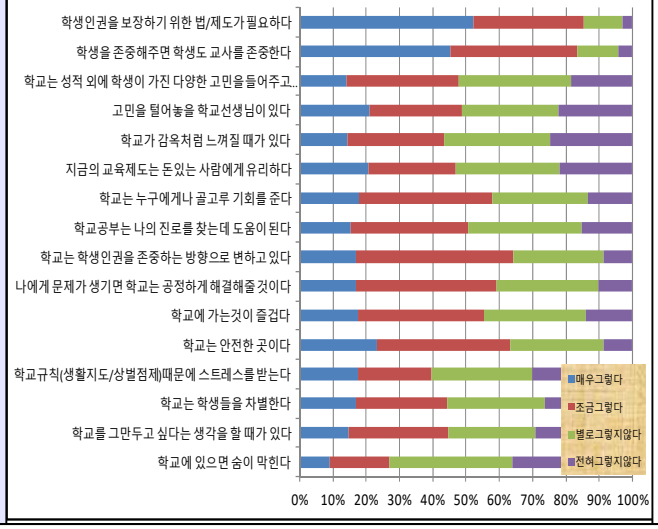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26.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학교가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질문에는 43.9%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4 시사점

*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보통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4가지 기본원칙은 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무차별',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참여'의 원칙이 그것이다.

■ 인권적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벌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된 상벌점제 역시 폐지되어야 하고, 선도부 역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은 결과로서의 행동 변화 뿐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자극'의 도덕성과 인권적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체벌이 학생지도의 방안으로 사용되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

■ 기본권적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여 학생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두발, 휴대전화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교사, 학생, 보호자에게 적극 알리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을 규율하는 생활규정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행동의 자유, 방과후학습 선택권 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학교가 학생을 차별한다고 느끼는 요인(성적 및 외모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생회 임원 출마 제한은 차별이며, 징계시 소명권을 보장하여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회/동아리 활동의 시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며, 특히 집회 및 단체행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 교사와 학생 모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인성교육, 혹은 각종 예방교육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은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인성교육이 한 사회에서 강조하는 품성에 대하여 교육하는, 좀 더 사회화로의 교육적 목적에 가깝다면, 인권교육은 그것이 인권적인가를 유일한 질문으로 던지며, 한 사회에 대하여 인권적이길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사진 및 홍보 자료

충청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1차 세미나

충남도의회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김영수의원)을 발족합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연구모임의 이후 활동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 5423 3914)

* 일시 : 2019. 3. 13(수). 10:30~12:00
* 장소 : 충남도의회 회의실 108호

2차 연구 모임

□ 개요

일시	2019. 4. 13.(토) 10:30~12:30		
장소	천안시 소재 공간사이 세미나실		
시간계획	내 용		비고
10:30~10:40	등 록	· 개회선언 · 참가자 인사 · 1차 연구모임 결과 보고	
10:40~11:40	세미나	· 발표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변화와 과제 조영선(교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1:40~12:20		· 질의 · 응답 및 토론	
12:20~12:30		· 정리 및 폐회	

□ 진행 내용

○ 김영수의원(대표) 포함 총 11명의 위원 참석

○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등 청소년과 일반 시민 15명 참여

○ 발표자 조영선(교사)로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운영 상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 · 응답 진행

○ 인권보장의 제도화 필요성,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도교육청의 인권보장 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

○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더불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변화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주제 발표 자료(학생인권과 조례)

- 학생인권 전국 상황은 어때요?
-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과 비시행지역비교
- 학생인권조례의 구조
- 학생인권과 자치
-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시사점
- -학교안 과 자유권을 넘어서기 위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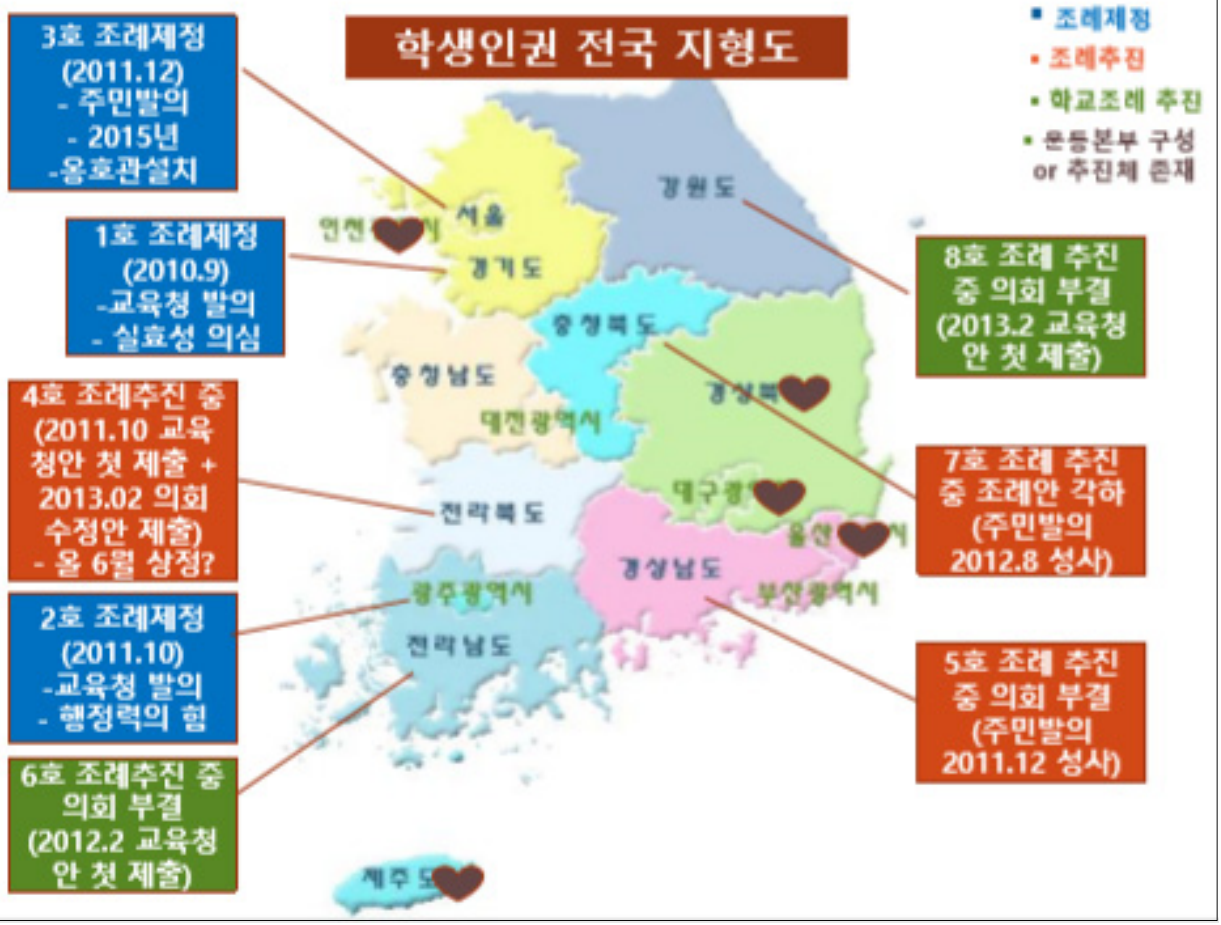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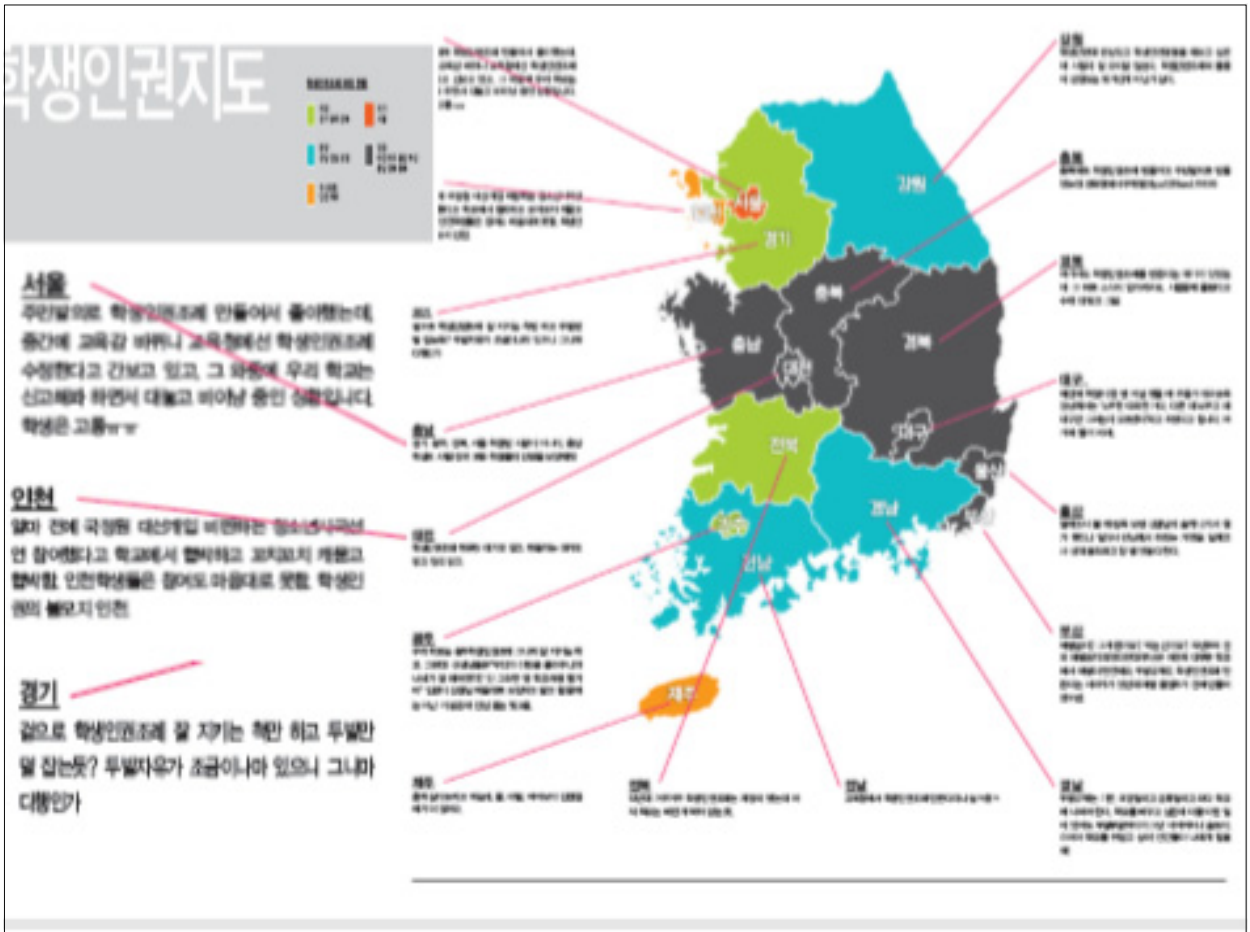

대구

예전에 학생이 한 명 자살 했을 때 우동기 대구교육감님에서는 "노무현 따라한 거다, 다른 데 놔두고 왜 대구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뭘 더 바래.

광주

우리 학교는 광주학생인권조례 그나마 잘 지키는 학교. 그런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만큼 들어주니까 니네가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옆 학교처럼 할거야" 인권이 선생님 마음대로 보장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인상 듣는 빛고을.

경남

두발규제는 기본, 국경일이고 공휴일이고 죄다 학교에 나와야 한다. 학교를 바꾸고 싶은데 다들 이런 일이 있어도 부글부글하다가 그냥 삭여버리니 슬프다. 오이야 학교를 뒤엎고 싶어 인간들아 니네게 힘을 줘!

강원

학생인권에 관심있고 학생인권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이 잘 모이질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들풍이 강원도는 빗겨간게 아닌가 싶다.

충북

충북에도 학생인권조례 만들자고 주민발의로 만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주민발의 po각하we! 오아아

부산

체벌금지?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작년부터 전국 체벌금지 되었다던데 부산은 여전히 대부분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해요. 두발규제도, 학생인권조례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발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 줬으면.

제주

흔히 삼다도라고 하는데, 돌, 바람, 여자보다 인권침해가 더 많아요.

우리 학교는 어떤가?

- 1) 학생회실(동아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 2) 학생회실(동아리실)에 컴퓨터 등 기본 사무용품이 갖추어져있나요?예□ 아니오□
- 3) 학생회 전용 게시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있고, 활성화 되어있나요? 예□ 아니오□
- 4)학생회 예산·결산을 학생회를 통해 심의 · 의결하나요? 예□ 아니오□
- 5) 학생회 자체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나요?
- 예□ 아니오□

우리 학교는 어떤가?

- 6) 학생회, 학급회 선거 때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가 이루어지나요? 예□ 아니오□
- 7)학생회, 학급회 선거를 할 때 입후보 이후 선거 까지 입후보활동과 선거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나요?
- 예□ 아니오□
- 8)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9)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안내 받았나요? 예□ 아니오□
- 10)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쳤나요? 예□ 아니오□

우리 학교는 어떤가?

11)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는 정례화 되어있나요?예□아니오

12)건의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3)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4) 적과 징계 기록에 관계없이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5)학생회 예산을 미리 안내받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인터넷 활동, 신문간행 등의 언론활동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요?

예□ 아니오□

우리 학교는 어떤가?

11)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는 정례화 되어있나요?예□아니오

12)건의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3)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4) 적과 징계 기록에 관계없이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5)학생회 예산을 미리 안내받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1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인터넷 활동, 신문간행 등의 언론활동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요?

예□ 아니오□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회의 권한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회의 권한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회의 권한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학생자치 권한 및 역량 강화
합법적 참여기구 (학생회 권한보장)
인권침해구제 기구
2단계
참여권-학생회자치,
의사표현의자유 (언론, 집회, 결사 등)
1단계
신체의 자유
, 의사표현의 자유 (체벌금지,강제보충)
학생인권, 오늘의 날씨
'상위법 위반 대법원 무효소송'이라는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이 꽁꽁
"교권침해 폭증" 먹구름 몰려와
보수 기독세력의 총공세
고
서울 교육감 선거의 패배 + 7월 조례 개정안 발표
보수 교육계
보수 정치권
'학교폭력' 태풍, 잇따라 몰아쳐
2014.06.04 지방선거까지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한 강추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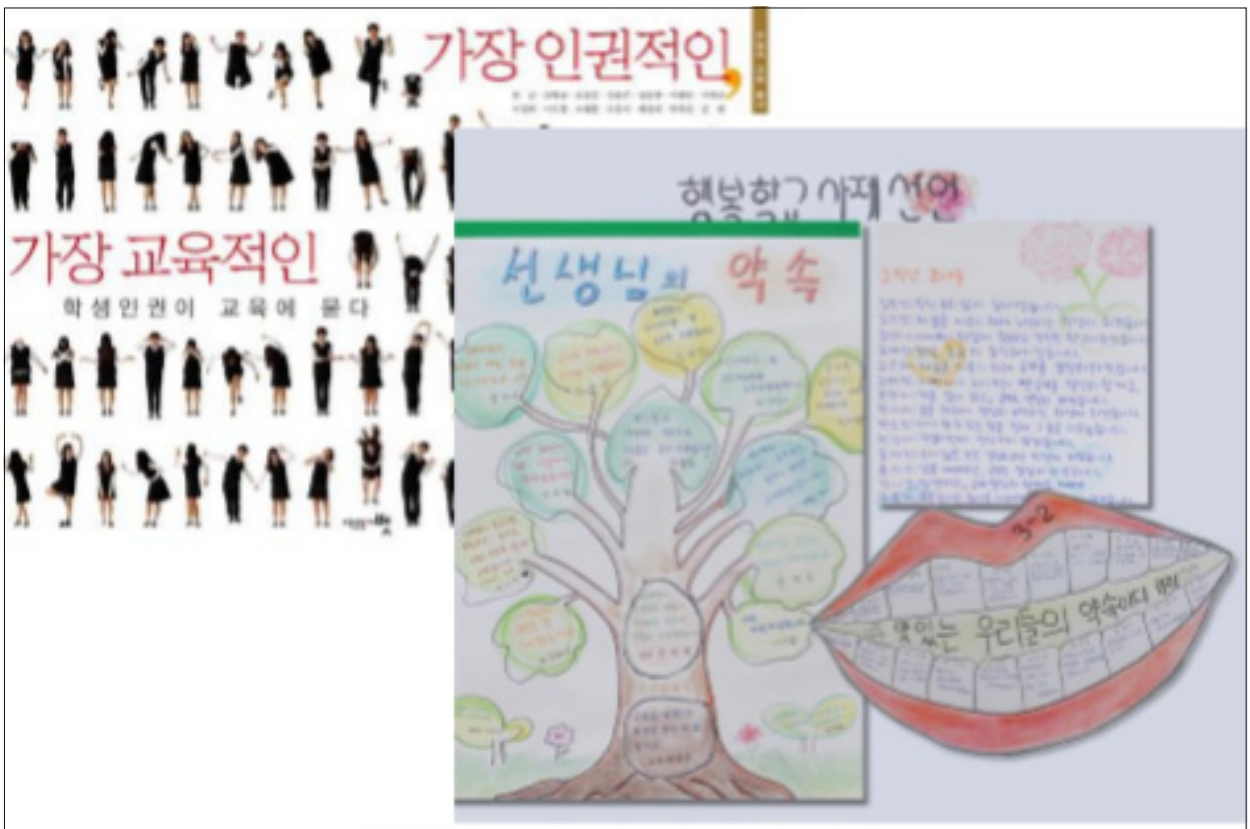

지금껏 인권이 교육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교육이, 교사가 인권을 초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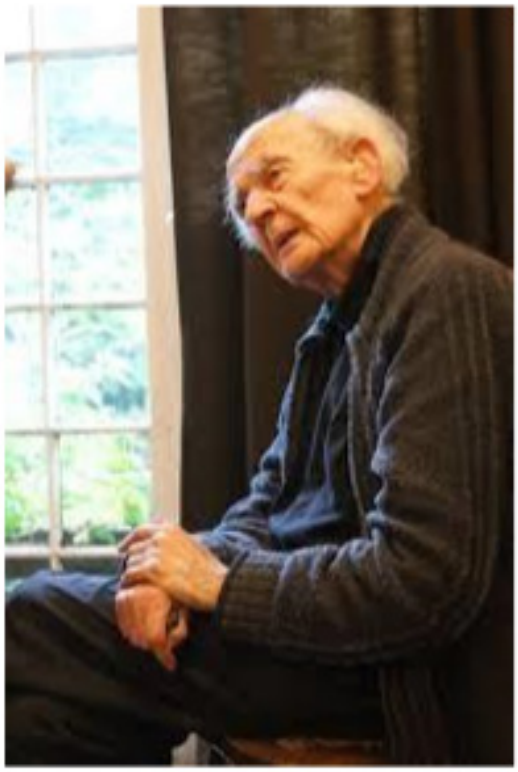

당신은 마음대로 이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을 수 있다**. – 지그문트 바우만, <자유>

자유는, 속박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에서, 권력이다. 자유는 특권이자, 권력이다. – 바우만, <자유>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규율에 '포함' 시키기 위해 통제하였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이다.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감시원들이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 '쓰레기'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이다. 더욱 나쁜 소식은 오늘날 오래된 빅브라더와 새로운 빅브라더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다.

-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 사진 및 홍보 자료

충청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세미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와 과제
일시 2019. 4. 13(토) 10:30~12:00 장소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공간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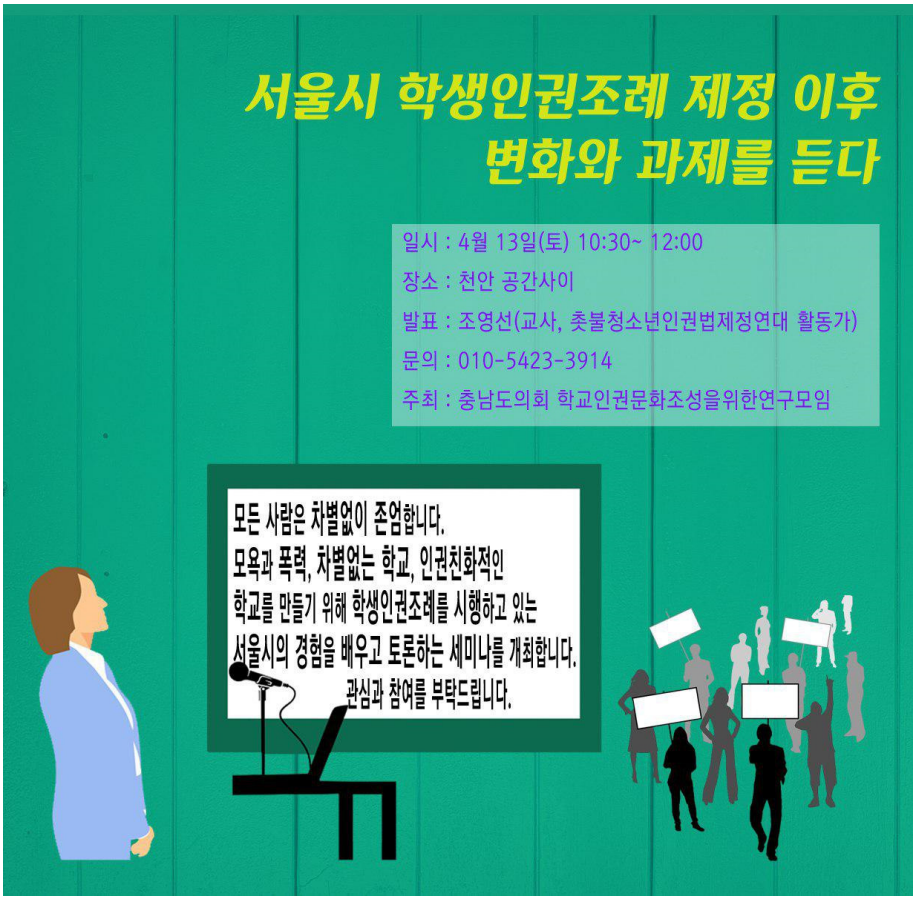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와 과제를 듣다
일시 : 4월 13일(토) 10:30~ 12:00
장소 : 천안 공간사이
발표 : 조영선(교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문의 : 010-5423-3914
주최 :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조성을위한연구모임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존엄합니다.
모욕과 폭력, 차별없는 학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험을 배우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차 연구 모임

□ 개요

일시	2019. 5. 24.(금) 18:30~20:30		
장소	당진교육지원청 강당		
시간계획	내 용		비고
18:00~18:30	등 록	· 참석확인 서명, 자료집 배부 · 장내 정돈	
18:30~18:40	개 회	· 개회 인사 · 좌장 : 김영수 충남도의원(연구모임 대표)	
18:40~19:00	주제 발표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제언 · 발제 : 한상희(서울시인권위원장/교수)	
19:00~19:50	1부 토론	· 토론자 - 박신자(교사) - 김나민(당진고 학생) - 유내영(학부모) - 이은영(충남도교육청) - 이선영(충남도의원) -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 부뜰)	
19:50~20:20	2부토론	· 질의 · 응답 및 종합토론	
20:20~20:30		· 정리 및 폐회	

□ 진행 내용

○ 김영수의원(대표) 포함 총 17명의 위원 참석

○ 당진교육장과 당진시의원 비롯 청소년과 시민 70명 참여

○ 한상희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박신자(홍동중 교사), 김나민(당진고 학생), 유내영(학부모), 이은영(충남교육청), 이선영(도의원), 이진숙(인권단체)의 토론이 있었고, 이후 청중과 질의·응답 진행

○ 김영수대표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

○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며, 이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주제 발표 자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 의미[1)]

한상희(건국대 법전원 교수)

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2012년 1월 26일 한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서울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울시민들이 주민발의의 방식으로 만든 서울시민의 조례이자 동시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의 굳건한 약속으로 탄생하였다.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생들은 의연한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격체임을 선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학생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이라는 대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날 우리의 학교교육은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잘못된 폐습을 인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의 이름으로 바꿔 나가고자 한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생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 시민의 뜻을 인권의 이름으로 엮어낸 것이다.

실제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성장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은 미성숙하기에 훈육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회 일반의 분위기이자 동시에 학교 내에 만연한 인식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체벌은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학생의 옷차림과 두발은 학교가 정한 기준에 맞춰졌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사생활을 지도했으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손을 떠나야 했다. 여기에 교육행정과 보수적인 언론이 가세하여 학생인권의 가치를 사회적 일탈의 큰 원인으로 보는 편견을 양산하였다.

총 51개의 조문을 이루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

1) 이 글은 토론의 목적으로 기존의 자료들을 편집한 것인만큼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제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인용한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2011.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2018. 2. 등으로, 편의상 이하에서는 별도의 인용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려는 서울 시민의 장엄한 결단이다. 학생인권을 향한 학생·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10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이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를 위함이다.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학생도 의연한 인권의 주체임을 세상 모두를 향해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 교사 또는 지역사회와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들은 또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배려와 돌봄의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공허한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사회부분과의 긴밀한 연대와 공감, 상호배려의 윤리에 터 잡아 제대로 존중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가 추구하는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되는 인권공동체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학생인권의 문제를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에서 학생인권이 의미 있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하고 바꾸어내는 중요한 지점을 이루고 있다. 학생들은 이 조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그 자유와 권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혹은 교사들과 더불어 항의하고 요구하며 학교의 생활환경을 바꾸어내고자 하였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내고자 애쓰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혹은 교사들 자신의 교육관이나 교육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소중한 기회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인권의 수호자가 되어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억압적인 교육현실을 깨쳐내고 모두가 웃으며 다닐 수 있는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간략한 역사를 담아내고자 한다. 서울시라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학생인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그려내면서 학생인권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Ⅱ. 아동인권과 학교교육

1. 아동인권

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의당히 보호받아야 하는 이 시대의 윤리이자 법적인 명령기도 한다. 아동이든 청소년(통칭하여 “아동”)이든 그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배움의 자리에 관계 없이, 생활의 능력과 관계 없이, 무릇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인이며 모든 인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권의 주체가 된다.

사실 그동안 아동들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 온 적이 비일비재하였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연약하기에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고 부족하기에 보다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혹은 오늘날의 사회는 바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빌미로 아동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더러 어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 노동을 강제하거나 혹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잣대에 맞추어 아동들이 생활해 나가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굴지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건설되는 빌딩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간 채 하루 종일 만들어야 하는 한 개 50원짜리의 벽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동들이 전쟁에 휘말려 총을 들고 나서기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이웃 나라의 대도시로 가서 성매매를 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꿈꾸는 여자아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아동들이 어른들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아동 또는 학생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 보면 이 조례의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아동”의 경우 100건의 결정례 또는 의견이 나오며, “학생”의 경우 205건이 나온다. 물론 이 모두가 학생/아동인권관련사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의 인권이 어른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교칙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조차 금지하여 시정권고(2009.12.14. 09진차889)를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장애학교의 교사들이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2010.11.15. 10진정572400 병합)되기도 하였다. 일제고사를 거부하자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시위하여, 다른 학생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동의 없이 피켓을 수거한 학교도 있었다(2010.5.10. 08진인4868).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7대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차기정부주요인권과제”(2008.1.14.)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①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정책의 정비, ②빈곤층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확보, ③가정·학교 밖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거론한 것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음을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심각한 현안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1989. 11. 20.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법으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

>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

아울러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우리 헌법을 보건, 국제사회가 널리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별첨자료 참고)을 보건, 아동의 인권은 어른의 그것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아동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만큼 어른들보다 모자라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가 되며, 단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많은’ 인권을 가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는 ①인권 존중(respect)의 의무, ②인권 보호(protect)의 의무, 그리고 ③인권 실현(fulfil)의 의무로 정리된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 가지는 생존할 권리(Survival Rights),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

발전의 권리(Development Rights),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Rights)) 등의 4대 권리에 맞추어 보다 복잡해지고 보다 다양화된다. 즉, 국가는 아동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Protection),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예방(Provention),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 그리고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공(Provision), 그리고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참여(Participation)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며, 그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에 부여되는 권리보다 더 많은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할 가치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동의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아동의 참여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 아동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러 실수하기도 하고 더러 어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실수나 행동이 아동의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아동의 '미성숙'은 보다 많은 보호와 배려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이런 실수나 행동은 어른들의 보다 많은 보살핌과 제공의 의무를 촉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실수나 행동은 아동의 생활과정이 아동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함을 의미하게 된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어른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2. 우리 학교의 인권현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그 의미를 잃어 버린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발전모델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의 부산물처럼 한국사회 도처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학교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학교체제는 일제식민지체제를 거치면서 19세기 군주의 절대적 지배하에 군사적 교육체제를 구축하였던 프로이센 왕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온 만큼 그 근원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이것은 곧 아동의 인권이다-과는 친숙하지 않은 관행을 쌓아 왔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시대는 인권보다는 국가안보를, 학생의 이익보다는 경제의 성장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던 만큼 그 식민지잔재들을 극복하기는커녕 학도호국단과 같은 반인권적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지금에 와서는 이런 현실에 극한의 상태에까지 치닫은 대입시 경쟁이 겹치면서 학교로 하여금 인권이 보장되는 배움의 터라는 이상형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유능하면서도 순응적인 노동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길들이고 순치시키는 훈육의 장이 되어 권

위주의적 통치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한국의 학교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면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주어진 규칙에 순응하도록 훈육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학교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학생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억제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정치는 학교교육을 통치를 위한 국민순치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보장이나 그를 위한 시민의식이 발전하는 것으로 가로막아 왔다는 점도 학생인권의 실천에 큰 장벽이 되었다.

이런 현실은 학교현장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0교시니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야간 자율학습 등과 같이 대입시 위주로 학과수업을 강제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이다. 그와 함께 체벌이라든가 각종의 언어폭력, 학생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모양과 규격으로 규제되기만 하였던 복장・두발, 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교육의 객체로만 전락해 학교운영과정에서 온전히 소외되어 버린 학생의 지위, 급우간의 관계에서조차 배려와 존중의 의식이 사라지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학교현장 등등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처한 현실을 너무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논의되던 당시(2009년)를 기준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며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청소년의 숫자 또한 2003년 100명에서 2009년 202명, 그리고 2010년 146명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세계일보, 2011.4.11.)도 바로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학교현실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실제 당시를 기준으로 5년간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보면 성적비관이 100명(115%), (또래 집단 등의) 폭력・집단괴롭힘이 10명(1.2%), 이성관계가 62명(7.1%) 등 학교등 교육과정의 여하에 따라 치유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염세(160명, 18.4%), 가정불화(277명, 31.8%) 등과 같이 사회적 지지망-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라고 할 것이다-의 확충을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의 학교현실이 청소년/아동들의 “미성숙”함을 보완하고 보호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기에 1996년과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아동-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지적이다. 학교가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상 이를 교정해야 할 교사는 물론 판사들까지도 아동인권에 대한 소양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선을 향한 자각

이런 상황을 바꾸는 전기는 한국사회가 1987년의 민주항쟁이래 민주화의 단계에서 시작된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학생인권의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사이자 동시에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가 주도하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시민들과 교육자들의 반성이 이어지고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확산되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사회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생운동은 학교공동체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학생운동의 방향이 종래의 정치운동에서부터 청소년인권운동 및 학교개혁운동으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과 훈육의 대상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였다. 학생은 스스로 학교생활의 구성원이자 엄연한 주체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인권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인권보장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학교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구현하는 교육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되고 강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권리를 가지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성찰 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선언하고자 하였다. 학생은 언제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들

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쌓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되는 동시에 학교 그 자체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생활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에 가장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유엔아동인권협약은 제28조 제2항이었다.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에 걸쳐 생활하게 되는 학교는 언제나 이 협약에 열거되어 있는 아동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아 실천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29조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할 것을 촉구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학교교육은 경제성장이나 국가안보와 같은 어른들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제원칙들을 존중하는 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아동은 아동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른들의 목적이나 그들의 이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Ⅲ. 학생인권조례: 주민운동과 그 경과

1. 학생인권조례는 왜 필요한가?

그러나 이런 학생인권의 요청들은 단순한 윤리적 요청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인권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서약한 가장 숭고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보다 강력하고 공식적인 장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 또는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일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최소한 국가나 지역사회가 인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과 같은 강제장치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맥락에서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에서도 보았듯이, 아직까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그리 높이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천부적인 인권들을 제대로 보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어떠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항목들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인권들이 침해될 경우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법규범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또 그 정함에 따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국회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학생인권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국회의 입법과정이 너무 복잡한다. 사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하여 학생인권을 학교에서도 보장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제대로 된 국회라면 이 제18조의4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입법-예컨대 학생인권법 또는 학생인권보장법-을 하여 학생인권보장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 국회는 여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6. 3. 8.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 비추어볼 때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에 의한 해결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인권의 보장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지역공동체에 따라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인권항목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합의하에 실천해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교육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학생인권의 내용과 그의 보장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실천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런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기반한 학교 생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를 학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 잘못된 점을 교정함으로써 보다 친인권적인 학교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조례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화된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그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바꾸어낼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추진경과

(1).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이끈 전사(前史)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존엄한 인격체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의 기원이 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동시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독자적으로 전개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전사(前史)를 살펴보기로 한다.

■ 1988년 : “반장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중・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참여 및 교육민주화 요구

- 군부독재에 맞선 1988년 민주항쟁에 중・고등학생도 대거 참여했다. 학생들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함께 학생회 직선제, 강제보충수업 폐지, 두발규제 철폐 등 교육민주화를 동시에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 1989년 : “학생을 살리는 교육!” 학생들의 전교조 지지와 인권 보장 요구

- 1989년 5월, 비민주적인 교육현장을 바꾸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했다.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해직사태가 이어지자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전교조 지지와 함께 강제보충과 두발규제 폐지 등을 함께 요구했다.

■ 1991년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한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와 정부의 보장 책임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 1995년 : “방과 후의 시간을 돌려달라!” 최우주 학생의 헌법소원 추진과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탄생

- 춘천고등학교 1학년 최우주 학생이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의 시간을 빼앗고 학생 의견을 묵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글을 계기로 학생인권에 관한 온라인 논의가 불타올랐다. 그해 말, 최초의 학생인권단체인 ‘중·고등학생복지회’가 결성됐다.

■ 1998년 : 교육부, 학생인권선언 제정 시도

-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 부딪혀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고등학생복지회가 11월 3일 ‘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이다.

■ 2000년 : “No-Cut!” 학생에게 두발자유를! 온라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

- 청소년의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진행한 두발자유 서명에 무려 16만 명이 참여했다.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이어졌다. 사회적 반향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별 토론회를 열어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 2001년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구시대적 교칙의 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 2002년 : “신효선·심미선을 살려내라!” 청소년 주도의 첫 촛불집회

-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으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학생의 죽음이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1년 넘게 이어졌고 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집회 참여를 막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 2003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맞선 정보인권 보장 요구의 본격 출현

-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거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시도했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나서서 정보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 2003년 : 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이 낳은 사회적 반향

- 19살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으로 폭력과 자살의 위험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다.

■ 2004년 :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강의석 학생의 1인 시위와 단식

-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학생이 강제 예배 반대와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이에 학교가 퇴학 징계를 내리자 강의석 학생은 45일에 걸친 단식으로 맞섰다. 결국 학교는 퇴학을 취소하고 예배 참석 자율권을 약속했다.

■ 2005년 : 다시 “No-Cut!” 제2의 두발자유운동 개시, 내신등급제 및 입시경쟁 반대 촛불집회

- 두발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학교 안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두발자유를 외치는 학생들도 있었고, 두발자유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청소년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 또한, 5월에는 내신등급제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약 1000명가량 모여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 2006년 : 국회,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첫 발의

-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기본적인 학생인권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통과를 바라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청소년들의 행진, 집회 등이 이어졌다.

■ 2007년 : 「초·중등교육법」법에 학생인권보장 조항 삽입

-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의 결실로 「초·중등교육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조항이 삽입되었으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 하나가 삽입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 2008년 : '나쁜 교육'과 반민주적 정부에 맞선 제2의 촛불집회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을 달궜다. 처음 촛불을 든 이들은 중·고등학생이었다. 청소년들은 '자율화'를 명목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정부지침을 삭제해버린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어나갔다.

■ 2010년 : 전국 최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 2008년 최초로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인권 전문가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2010년 10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됐다. 같은 해 6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대폭 늘어났다.

■ 2010년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개시

-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전국 각지에서 조례 제정 운동이 확산됐다. 2010년 7월, 서울에서는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결성하고, 서울 시민의 힘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 2011년 : 주민발의 성공과 의회 통과

-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자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12월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 2012년 :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 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민의 발걸음

학생인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두 법률에는 '학생(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이 담겨있어 무엇이 학생인권이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책무를 지고 있는지가 모호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이다. 서울 시민들은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민발의 제도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성사 될 수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약자이다. 주민발의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할 권리조차 없다. '학생에겐 권리보다는 보호와 통제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는 주민발의운동은 실패의 우려가 큰 시도였다. 게다가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은 8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 유권자로부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친필서명까지 받아야 했기에 어려운 절차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은 10만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결국 성공했고,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역시 주민발의 운동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교육청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내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고, 학교구성원의 학생인권에 관한 이해와 토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주민발의안이 접수된 이후에는 성실한 법제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보냈고, 의회의 심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교육청이 애초 준비하던 조례안은 다양한 이유로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에 관한 내용은 주민발의안에 비해 더

실효성이 높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반영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를 통해 탄생하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청 발의안과 주민발의안이 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교육청의 적극적 태도가 더해졌기에 가능했다.

〈한 눈에 보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

▪2010년 5월 10일 : 경기·서울·인천 교육감 후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식' 개최

▪2010년 7월 7일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2010년 9월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결성

▪2010년 10월 18일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의 '학생인권에 관한 의식 조사'(4,322명 대상)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80% 이상이 학생인권조례 필요하다고 응답.

▪2010년 10월 18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2010년 10월 27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주민발의 서명 시작

▪2011년 4월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총 11차례 지역순회 공청회 개최

▪2011년 5월 10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기간 완료

▪2011년 5월 20일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이나 정보가 누락된 무효 서명지 1만여장 발견.

▪2011년 7월 5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명부 추가 3만여 장 제출

▪2011년 8월 4일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2011년 9월 8일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각 부처 의견수렴 등 진행.

▪2011년 9월 30일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2011년 12월 13일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2011년 12월 14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에서 지지 성명 발표

▪2011년 12월 19일 :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수정안 통과

▪2012년 1월 2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2012년 1월 27일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2012년 5월 17일 : 서울교육청 학생참여단(참여단 100명) 발대식 개최

▪2012년 5월 31일 :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 19명) 발족

(3)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논의과정

그동안 학생인권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2009. 9. 17. 경기도 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 경기도 교육감이 10.5. 이를 경기도 조례 제4085호로 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 서울시민들의 조례안 발의운동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 의회의 조례제정절차에 회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과를 따라 그 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0

7. 7.-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발족

10. 27.-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주민발의(안) 서명추진 (~'11.4.26)

11. 09.-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11. 23.-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워크숍

12. 21.-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11

4. 5. -의견수렴: 지역별 순회 공청회 8회, 교육관련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목회, 초·중·고교 교장회 등) 방문, 연속토론회 4회 등(- 12. 20.)

4. 20.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1회)

4. 27. -학생인권 관련 연구 용역 추진(4.27~8.31)

6. 2.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6.2.~6.15.)

7. 29.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수립을 위한 TF 구성· 운영(7.29~8.18)

8.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청구 수리: 법정 인원 충족(97,702명)

9. 7. -학생생활지도자문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발표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발표 및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주제별 의견수렴(홈페이지 9.7~9.27)

9. 8. -학생인권조례초안 및 학생생활지도혁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공청회

9. 2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6차 회의(학생인권조례 초안 수정)

9. 30.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의회 이송

12. 19.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수정안 시의회 통과

2012

1. 9.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1. 20.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 철회

1. 26.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4. 1.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및 신규 조사관 채용(조례 제42조)

4. 24.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조례 제38조)

4. 24.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조례 제51조)

5. 17. -학생참여단 발단식 및 대표단 구성(조례 제37조)

5. 24. -학생참여단 대표단 간담회(조례 제37조)

5. 31.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조례 제33조)

Ⅵ.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지도이념과 입법의 방향성

1) 서언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체임을 확인한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비롯한 자기 생활을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 꾸려나갈 수 있음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형과 내용에 따라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학생인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이로써 학생의 자유가 무엇이며 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며,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 안에서의 공동생활과정에 필요한 질서와 상호협력의 기회를 확보한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윤리적 의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인권의 양면성을 담아낸다.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상호협력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교육 당국이나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학생의 인권 문제는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책무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흔히 학생들은 '미성숙하다'고 하지만 이 조례는 그 때문에 학생들은 실수할 권리를 가지며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성찰 위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학

생들이 공포와 폭력,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최대한·최우선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원조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2.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지향점은 아동인권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인 UNICEF가 선포한 인권기반의 아동친화적 학교를 위한 13가지 체크리스트(CHARACTERISTICS OF A RIGHTS-BASED, CHILD-FRIENDLY SCHOOL)[2]에 터잡는다. 이에 의하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학교는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반영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넓은 의미에서 아동 전반에 관하여 바라보고 이해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아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④학교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이며 여자아이에 친화적(girl-friendly)이어야 한다.
⑤학교는 질적인 학습결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⑥학교는 아동의 생활 현실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학교는 다양성에 탄력적이고 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⑧학교는 모든 아동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기회를 존중하며 또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⑨학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⑩학교는 적절(affordable)하고도 접근가능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⑪학교는 교사들의 능력과 도덕성, 헌신성 그리고 그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⑫학교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⑬학교는 공동체에 기반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을 구성하며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사회적 환경을 이루고 있는 만큼 모든 학생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물리적으로는 안전하여야 하며, 정서적으로는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UNICEF의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학생들의 인권을 연구한 한 보고서[3]에서 우리의 학교현실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10가지 열쇠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다.

2) www.unicef.org/lifeskills/files/CFSchecklist.doc
3) 진영종 외,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 7면 이하

①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②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③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④감당할 만한 교육
⑤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⑥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⑦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⑧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⑨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⑩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이 10가지 열쇠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4개의 아동인권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즉,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제3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의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제6조), 그리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제12조)에 기반한 것이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담고자 하는 학생인권의 기본적 방향성 내지는 그 핵심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기에 의당히 그 조례안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심도깊게 검토되었던 것도 바로 이 13가지 체크리스트와 10개의 열쇠말이었다.

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와 지도이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상과 같은 원칙과 체크리스트, 열쇠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지도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①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②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③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이루어냄을 그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 목표 :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
- 핵심 가치 : 자유, 상호존중, 평등, 다양성

▸ 추진 과제

1.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의 배움터로서의 역할 강화

·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인격과 자유를 존중받는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

· 모든 형태의 폭력과 모욕을 없애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 학교문화조성

· 부당한 간섭은 사라지고 신뢰에 기반한 교육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사-학생 관계 확립

· 다양성을 환대하고 성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장애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격려되고 경청되는 학교문화 조성

2. 학교 구성원 모두의 생활규정으로 변경

·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규범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약속으로서 학교규범의 위상 재정립

· 통제 위주의 학생지도 방식에서 학생-교사 동반자형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학교규범 정비를 통해 자율적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는 학교문화 조성

3. 배움과 삶을 동시에 돌보는 학교환경 구축

· 학생과 교사가 모두 여유롭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삶도 돌보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학교의 위상 재정립

·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 강화

4. '인권 책임 행정' 구현

· 학생의 학습환경과 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강화

· 시대 변화에 맞는 교권 개념의 재정립 및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학생,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2)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 목표 : 민주시민으로 성장,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
- 핵심 가치 : 소통과 공감, 평화, 안전
- 추진 과제

1.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배우는 학교
   - 소통과 공감의 교사-학생, 학생-학생 관계에 바탕을 둔 평화의 학교 공동체 구현
   - ‘평화’ 감수성을 높여 학생 간, 교사-학생 간, 학생-학부모간 수직적·위계적 관계를 수평적·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
   - 서툰 관계 맺기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맺기 교육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
   -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갈등 상황에 평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2. 평화를 만드는 학교 시스템 구축
   - 경쟁 만능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으로 학교 교육의 목표와 지향을 명확화
   -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체계 정교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업무 담당자·체계 구축
3.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 시스템 구축
   -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일상적 돌봄 체계 구축
   - 파악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안팎의 지원시스템 구축
   -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 차원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추진
4. ‘평화 교육·문화 정착’의 책임 행정 구현
   -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정 및 교육청의 책임 강화
   - 다양한 위기 상황과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한 전문성 강화 기반 조성

· 위기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자료 개발과 보급,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3) 민주적 학교 공동체

▸ 목표 : 민주시민으로 성장,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

▸ 핵심 가치 : 권한과 책임, 참여와 자치

▸ 추진 과제

1.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는 학교

· 학교 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실천 방식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자치의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자치 모임이 구성되고 그 역량이 강화된 학교

2.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학교

·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 활동의 역량 강화

·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학교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주의 제도 정비

·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 모임과 교사 자치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제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시스템 마련

4.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자치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

· 학교 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치 단체의 공식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계획 수립

· 학교에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 수립

·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교육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설정한 학생인권의 기본개념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그 초안은 지구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인권들은 우리의 학생들도 그들과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임을 선언하고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UN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들을 정리하는 한편, 이 자유와 권리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권항목들을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어 이 초안은 이러한 인권의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리잡고 자신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자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학업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수준, 혹은 가족형태 등에 따른 구분이나 차별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모든 인간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초안은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은 모든 인권의 핵심을 이룬다. 흔히 '미성숙하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요청은 변함이 없다. 다만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주의의 배려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따름이다. 그들이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자신의 의지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최대한·최우선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원조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 것이다.

이 초안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1) 소극적 인권에서 적극적 인권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발전을 향해 열려 있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것인 만큼, 그의 인권규정은 외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상태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특히 형성의 자유-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장하는 관계망

또한 국가와 개인과 같은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학교, 교사, 다른 학생 등과 같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인 만큼 이들과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와 욕망들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규정들은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소극적인 규정방식에서부터 "~할 자유(혹은 권리)를 가진다." 라는 적극적 규정방식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선언적 인권에서 실천적 인권으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 천부인권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인권보장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흡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선의 자유, 최고의 권리만을 선언하다 보면 그를 실천하기 위한 제반의 여건들이나 자원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 한 현실을 간과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공교육체제하에서 실시되는 학교교육의 현장은 최선의 인권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설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일차적으로는 학생인권의 목록들을 정리하여 선언하는 한편,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 자유·권리의 실천을 위하여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 그 집행의 과정을 주도하는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학생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은 그 한 예이기도 하다.

(3) 대립적 인권에서 협력적 인권으로

전술하였듯이 학생인권은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보장된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에서 보장되며 이를 위해 학교장, 교사, 다른 학생은 물론 교육감이나 학부모 등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또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학생인권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누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meone)」라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에 대한 혹은 모두와 함께하는 자유(Freedom to and with everyone)」라는 구조로 다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종래 대부분의 인권선언이나 권리장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자-침해자의 모델"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모델"을 주된 지침으로 삼아 구상되었다.

(4) 피동적・억제적 인권에서 능동적・참여적 인권으로

학생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려와 보호의 수혜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어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학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발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상정하였다. 그들은 「불완전한 어른」이 아니라 아직은 「미성숙한 시민」일 따름이며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제반의 자유와 권리를 자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학생의 인권에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중의 하나이며 자기 나름의 학교생활을 구성하고 또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학생은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유효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단위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개별적・미시적 인권에서 종합적・거시적 인권으로

무릇 인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그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사후적인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느 한 순간 인권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희생과 투자를 거쳐야만 인권은 비로소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학생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의 인권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인권보장과 교육효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를 개선하는데 작용하는 장애나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누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요청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기를 나누어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인권의 실태조사 및 평가, 그리고 그를 최적의 상태로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후적인 평가와 교정 등의 과정을 설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적절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에 필요한 자기희생의 윤리를 감내하고자 할 때 인권의 보장은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훈육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의 관계로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 학교의 경우 이러한 요청은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요원들의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지식의 교육과 함께 인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권의지와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5. 학생인권조례의 입안과정에서의 유의사항들

이러한 지향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그 핵심내용으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라는 명칭에 부합하게끔 조례로써 보장하여야 할 학생 인권의 주요한 항목들과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또 그것이 실천 가능한 형태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생명・생존・발달의 권리를 비롯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권리들뿐 아니라 우리 헌법과 각종의 법규정들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인권들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되어 조례의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항목들이 이상적인 모습에만 그쳐서 명목상의 권리로 표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은 선언적 의미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천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학교현실, 사회현실에 비추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러한 인권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반의 실천요강들과 각종의 인적・물적 자원들도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평가가 필요한다.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법령의 제정만으로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인권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권 또한 오랜 세월을 거쳐 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바람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 속에서 학생인권을 최적의 상태로 실천하기 위한 치밀한 실천계획도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평가, 인권실천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나아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기구의 설치 등과 같은 사항을 담아내어야 한다.

셋째,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다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며 실천하는 것은 적절한 인권교육과 함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권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인권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학생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요원들의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은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이는 학생인권의 실천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중의 하나이며 자기 나름의 학교생활을 구성하고 또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다. 이에 학생은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유효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단위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인권보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그 위험에 대한 예방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여서 학생인권에 대한 제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그 침해행태들을 교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인권이 보다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수반되어야 한다. 예방과 구제, 그리고 상담과 조언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생인권은 최적의 상태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권구제기구를 구성해 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과 그 인권구제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학생인권항목에 관한 검토의제들

학생의 인권은 무수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주요한 것들만 추려서 정리하자면 ①누구나 차별 없이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등), ②위험과 폭력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헌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19조 등), ③교육과 휴식에 관한 권리(헌법 제32조,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등), ④사생활과 일반적 행동자유의 권리(헌법 제17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⑤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내지 제15조 등), ⑥복지에 대한 권리(헌법 제34조, 제35조,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27조 등), ⑦학교생활에 참여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12조), ⑧적법절차의 권리(헌법 제12조, 제13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9조 등), 그리고 ⑨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항목들을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의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권항목에 대하여는 배움과 성장이라는 학생의 책무와 “미성숙”이라는 학생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극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주장도 적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찬반의 주장들을 잘 정리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것들을 골라내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찬반의 논의가 제기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던 인권의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

았다. 이들은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필요한 것들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조정과 첨삭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① 평등권

- ■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소수자 학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집단에 속하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② 위험과 폭력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체벌의 경우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음: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u>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 ■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③ 교육과 휴식에 관한 권리

- ■ 학습에 관한 권리
  - · 학습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 ·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강제적인 학습을 하지 아니할 권리
  - · 학습의 안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 · 진로 및 직업교육, 노동교육, 학생인권교육 등을 받을 권리
  - · 장애인 등 소수자 학생의 경우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 ■ 정규교과외의 학습 및 활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
  - ·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할 권리

■ 휴식에 대한 권리

· 청소 등 부당한 사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④ 사생활과 일반적 행동자유의 권리

■ 두발·복장 등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일기장·소지품 등 사적 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교통·통신의 자유: 휴대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

■ 부당한 감시를 받지 아니할 권리: CCTV,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초상권, 성명권, 기타 사적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가족·교우관계, 신앙, 성적, 징계기록 등

⑤ 표현 및 결사의 자유

■ 의사 표현의 자유

· 학교신문, 방송에 대한 자율권 - 사전검열 혹은 사후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

· 적법한 절차 없이 학내 게시글을 삭제당하지 아니할 권리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종교수업에 대한 대체과목을 받을 권리

■ 집단적 표현의 자유:

· 다른 학생이나 학교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평화적 집회, 시위를 할 권리

· 의사표시를 위한 특정한 징표(뱃지 등)를 부착하거나 착용할 권리

· 집회 등을 위하여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결사의 자유

· 학교 안 또는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동아리를 결성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⑥ 복지에 대한 권리

■ 학습, 생활,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등의 면에서 학교의 복지지원을 받을 권리

■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

· 위생, 건강검진, 편의시설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하며, 그 지원을 받을 권리

■ 급식과 건강에 대한 권리

■ 학교생활, 기타 생활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

⑦ 학교생활에 참여할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권리

· 학생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자율권

· 학생회·동아리 등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권리

■ 학칙 등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그 회의를 방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권리

■ 축제·수학여행 등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⑧ 적법절차의 권리

■ 생활규정 등에 의하지 않는 훈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생활규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을 권리

■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청문을 열 권리

■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징계나 훈육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징계나 훈육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전문가, 신뢰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⑨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 권리침해 혹은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상담·조사·평결 등을 청구할 권리

■ 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

■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Ⅴ. 학생인권조례의 시대적 의미

1.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의 의미

(1) 주민발의로 탄생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4곳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자 유일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첫째,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사례다. 주민발의제도는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식이다.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조례안을 만들고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민주적 조례'이기에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함부로 훼손하기가 힘들다.

둘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과정은 학생인권에 관한 살아있는 사회적 학교였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큰 의제에 대해서는 서명을 받기가 쉽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의제는 시민들을 설득해 서명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당시만 해도 학생인권은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의제였다. 따라서 주민발의 서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의 현실과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학생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례 청구 서명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 동참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주민발의도 성공하고 조례도 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장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가장 선도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자유가 명시되었고,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위한 조항도 최대한 구체화되어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증진체계도 타 지역 조례에 비해 실효성이 높게 설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학생인권의 교육적 의미 확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 역시 컸다. 학생인권이 '하면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을 때는 사회적 논쟁도 불붙지 않았다.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생인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곧 도래할 현실'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을 설득해나가면서 결국 제정에 성공했고,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도약하게 했다.

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학생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인권은 이르다’와 같은 반론이 이어지곤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다’,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학생에게 인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성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운다’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과거에는 ‘학생이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 “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전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②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 ‘인권보다는 교육이 먼저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특정한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와 같은 반론이 이어지곤 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생인권의 반대말은 교육이 아니라 강압/폭력/차별이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의 학교’로 가는 길이 좀 더 확장되었다.

③ “마음속의 응원부대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이나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 문구가 삽입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 ‘이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성소수자 학생의 폭력과 자살 경험률이 다른 학생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인권 보호와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를 향한 차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이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 9월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④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교사도 행복하기 힘들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권’의 위축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왜 학생인권만 이야기하고 교사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 책무를 지키면서 교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권은 상생관계다’, ‘학생을 억압하는 교육은 교사도 억압한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이 교사를 존중하는 교육을 만든다’고 답하며 시민과 교육주체들을 설득해 나갔다.

‘교권’이 교사인권의 줄임말이라면 교사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도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강제야간자율학습은 교사의 강제 야근 없이는 성사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기대어있다. ‘교권’이 교사 교육권의 줄임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잘못된 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학생을 체벌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하다. 체벌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 때문에 교육하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 하지만=> 요 연결어는 어색한데? 학교는 교과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생활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통제와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이었다면, 현재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자율 중심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교육에 대한 책임은 통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갖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생에게만 규칙 준수를 요구하였다면, 현재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함께 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의식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 교사인권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구시대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는 학교폭력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동안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가해 학생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교사에게 강력한 지도권을 줘야 한다’, ‘위험천만한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면 내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진다’와 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야말로 폭

력과 차별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학교다’,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당해도 싸다는 논리가 폭력을 키우는 만큼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한 학교들이 있다’, ‘교사 지도만으론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자치력을 높여야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답하면서 시민과 교육 주체들을 설득해나갔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피해학생 모두를 지원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들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3) 학생인권조례가 바꾼 현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단순한 교육의 객체이거나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폐습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자 한다. 학생은 교사, 학부모와 함께 어엿한 학교의 구성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다른 구성원과 어울려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정리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학교 밖의 모든 사람이 학생의 행동과 생활, 의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으로 만들었다. 학생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있는지, 그것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익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받는 인권 중심의 사회, 인간 존중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단순히 하나의 바람에 멈추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은 스스로 혹은 교사와의 교감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권 의제를 발굴해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체벌이나 폭력적인 훈육 방식들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용모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맞서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요구하였다. 강제적인 종교 교육의 중단이나 대체교육의 실시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학교관리자가 학생회 임원의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관행에 맞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지도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실시되어 왔던 반인권적 폐습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이를 통해 학생을 억압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학생에 의해 행복해지는 학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생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교사의 생각과 교육철학,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으며, 획일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들이 스스로의 교육관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의 개정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서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폐지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예전에는 학생들의 발만 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비로소 학생들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 교사의 이야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로 이루어지는 교실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다루는 동시에,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권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생활의 주요 의제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또한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의 행동과 생활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학생 '지도' 업무가 주어졌던 과거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학교나 학급운영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역시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공동체로의 변화라는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그 시대와 사회의 축소판이듯, 학생인권은 곧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주도하였던 학생인권 담론은 시민사회에서 더욱 거시적인 인권 의제로 확대되었다. 즉,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둘러싼 학생/시민사회의 인권 담론과 의제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민주화' 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 중심', '인간 중심' 의 공동체라는 사회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법 제정 노력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인권' 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학생을 넘어 어린이·청소년 전반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조례라는 법 제도가 내포하는 지역적·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드높이는 큰 힘이 되었다.

첫째, 경기도에 이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타 지역의 조례 제정과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상위법 제정 움직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울에서 조례 제정 주민발의가 성공하고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광주에서 2번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이후, 경남과 충북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강원, 전남, 전북 등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고, 2013년 8월 전북에서 4번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장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인권이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그 위상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학생인권 보장이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학생인권에 관한 상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적 차이와 한계가 존재하는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상위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확고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을 넘어 학교 바깥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2012년 서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학생인권조례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기틀을 쌓았다. 이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도 늘어났다. 학교 안팎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과 같은 기본법 제정이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Ⅵ. 결 론

오늘날 학생의 인권문제는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의제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어버리던 지난 시절의 권위적 학교현장에서부터,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가 대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는 상황으로 이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규제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학생과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권의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다른 만큼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게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학생의 인권은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욕망과 의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역량이 중심적인 의제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한국에서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자주 술을 먹고 난폭해서 정서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 사랑 넘치는 선생님이 점심을 사주거나 방과후에 숙제를 봐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미담'이 될 수 있지만 영국인의 시각에서는 단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선생님으로 몰릴 수가 있다. 특히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카운셀러와 사회 복지사 역할을 겸임하려다가 아동에게 사고가 났을 때 교장이 문책을 당하고 구청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정신보건 센터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SENCo(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라는 선생님을 따로 두고 모든 연락을 담당하게 한다.<우이혁, 『코리안위클리』 2009. 04. 22.>

여기서 필자는 학생생활교육에 있어서 전문적 지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학생 그 자신이 자기 문제의 주체로 자리잡게 할 수 있도록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한다. 필자는 학생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관이나 교육방법론-혹은 그의 사랑과 자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관찰과 분석이 선행된 연후의 처방을 촉구한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 혹은 학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학교와 교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는 그에게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문제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러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가능한 모든 지혜들을 모아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고민과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이러한 성취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학생인권조례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집행기구의 위상이다. 그것을 교육청 행정라인의 한 조직으로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여 교육행정 일반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학생인권조례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다.

실제로 옹호관과 센터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학생인권의 과제가 교육청 전반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모든 업무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청 전체의 과제로 정착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학생인권의 과제가 현

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결국 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여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껏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학생인권에 관한 상위법률이 있을 때 좀 더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및 홍보 자료

충청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
발표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 2019.5.24(금) 18:30~20:30 / 장소 : 당진교육지원청 강당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조성을위한연구모임' 정책토론회
인권친화적 학교,
어떻게 만들까?
학생은 인권의 주체이자 시민입니다.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자치와 존중을 꽃피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5월 24일(금) 18:30 ~ 20:30
장소: 당진교육지원청 강당
좌장 김 영 수 (충남도의원)
발제
한 상 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현)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토론1 박 신 자 (홍동중 교사)
김 나 민 (당진고교 학생)
유 내 영 (학부모)
이 은 영 (충남교육청)
이 선 영 (충남도의원)
이 진 숙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토론2 종합토론
문의: 010-5423-3914

4차 연구 모임

□ 개요

일시	2019. 6. 27.(목) 15:00~17:00		
장소	충남도의회 회의실(108호)		
시간계획	내 용		비고
15:00~15:30	등 록	· 참가자 인사 · 3차 연구모임(토론회) 보고	
15:30~16:40	세미나	· 타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비교 및 제언 · 발표 : 이진숙(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16:40~17:00		· 정리 및 폐회)	

□ 진행 내용

○ 김영수의원(대표) 포함 총 16명의 위원 참석

○ 경기도·광주시· 서울시·전북도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충남도 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을 학습 및 토의

○ 지난 5월 24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토대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1차 준비 모임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연구모임 회원들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조례 내용을 구성하기로 의견 모음

□ 사진 및 홍보 자료

충남 <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 4차 세미나

"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 "

타 광역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비교. 분석

□ 일시, 장소 : 6월 27일(목) 15:00~ 17:00. 충남도의회(108호)

□ 문의 : 010-5423-3914

5차 연구 모임

□ 개요

일시	2019. 11. 13.(월) 17:00~18:30		
장소	충남도의회 회의실(108호)		
시간계획	내 용		비고
16:30~17:00	등 록	· 참가자 인사 · 4차 연구모임 보고	
17:00~18:20	세미나	· 학교인권문화조성 연구 결과 보고 · 발표 : 유미경(조례성안팀 간사)	
18:20~18:30		· 정리 및 폐회	

□ 진행 내용

○ 김영수의원(대표) 포함 총 12명의 위원 참석

○ 조례안 성안팀에서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상호 토론

○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기와 관련한 협의 후 학생과 청소년이 참여하며, 교사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학교 현장의 인권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진 및 홍보 자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5차 세미나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
의회
김 영 수
5:15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 5차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연구 결과 발표 후 전체 토론

□ 일시, 장소 : 11월 13일(수) 17시, 충남도의회 108호 회의실

□ 문의 : 010-5423-3914

Ⅲ 참고 자료

1 연구 모임 회원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대 표	김영수	교육위원회	
2	간 사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3	회 원	조철기	교육위원회	
4	〃	황영란	문화복지위원회	
5	〃	최 훈	문화복지위원회	
6	〃	이선영	행정자치위원회	
7	〃	안장헌	행정자치위원회	
8	〃	김문광	충남도교육청	
9	〃	이은영	충남도교육청	
10	〃	김다빈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11	〃	조정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12	〃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13	〃	박선의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14	〃	배정수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15	〃	정현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6	〃	이연순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17	〃	이지훈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8	〃	유미경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	〃	김종현	전교조충남지부	
20	〃	이득우	아산시민연대	
21	〃	장규진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22	〃	정재영	홍성YMCA	

2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안)

일러두기

❍이 조례(안)의 '제1장 총칙'은 서울시학생인원조례를 기초로 더하고 빼서 정리했습니다.

❍'제2장 학생인권'은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기초로 권리목록을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했습니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섞어서 재배치하고 일부 더하고 뺐습니다.

❍'보칙'은 경과조치가 필요해서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2019. 8.

충청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성안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1. 제정 이유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실효성 있고 인간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로 바꿔가기 위한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함(안 제5조 내지 제14조).

다.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같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라.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함(안 제18조 내지 제22조).

마.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함(안 제23조 내지 제29조).

바.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충남남도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30조).

사.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1명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둠(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아.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자.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4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유아교육법」제21조의2 제1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 제12조 과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과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③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다른 법령의 정함이 없는 한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날인,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령상 교직원에게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학교재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과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징계요구 전에는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 또는 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유휴시설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한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조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및 시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5.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⑦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제6항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결에 참관할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제31조에 따른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질문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해야 한다.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에 대한 검수에 참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에 표기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휴게실을 학교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8조(노동인권 교육) ① 학교의 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에 따라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또는 취업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문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장애 유형 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과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30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6명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3. 도교육청 학생인권·생활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2명

4.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2명
5. 교직단체 추천 교사 2명 이상 4명 이내
6.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명 이상 4명 이내
7.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학생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지원
5. 학생인권침해 예방활동의 지원
6.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특별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구제조치 사항을 권고
7.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8. 학생인권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의 지원
9.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 표명
11.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2.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13.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4. 기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학교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때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때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학생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9.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10. 학생인권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11. 위원회 및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의 업무 지원
12.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3.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14.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권역별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학생의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생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6.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자체행사 주관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정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지역 학생의회를 둔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5. 학생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6.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3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제37조제1항의 학생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입안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계획(이하 "법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40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면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3. 구제신청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인 때
4.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때

제41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사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살ㄹ 하게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 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와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와 협의회가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인권자료실) 교육감은 센터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45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과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때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과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때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46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와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47조(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4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제48조(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50조(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인권이 학생에 준하여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은 학교에 준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51조(유치원에 대한 특례)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하며,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